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1. . . (제 회)	

교 육 공 무 원 임 용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

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학급담당교원(담임) 보직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교육공무원법」이 개정(법률 제17657호, 2020. 12. 22. 공포, 2021. 6. 23. 시행)됨에 따라, 학급담당교원 보직에서 배제하는 징계처분의 사유와 그 배제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

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「교육공무원법」 제17조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교육공무원법」 제52조 각 호
2.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행위

⑧ 「교육공무원법」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파면·해임: 10년
2. 강등: 9년
3. 정직: 7년
4. 감봉·견책: 5년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보직관리의 기준) ① ~ ⑥ (생략) <u><신설></u>	제7조(보직관리의 기준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<u>⑦ 「교육공무원법」 제17조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<u>1. 「교육공무원법」 제52조 각 호</u> <u>2.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행위</u> <u>⑧ 「교육공무원법」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<u>1. 파면·해임: 10년</u> <u>2. 강등: 9년</u> <u>3. 정직: 7년</u> <u>4. 감봉·견책: 5년</u>
<u><신설></u>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 교원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748